주택청약부금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주택청약부금(이하 '이 부금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,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만 19세 이상의 자(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포함)이어야 하며, 이 부금과 주택청약예금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3조 저축방법 등

- ① 이 부금의 거래자는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② 월저축금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입금하거나(이하 '정액적립식' 이라 합니다), 불특정금액을 입금(이하 '자유적립식' 이라 합니다)할 수 있으며, 거래자는 신규 가입시 선택한 저축방법을 거래기간 중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③ 자유적립식부금 거래자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거래한 때에는 1회분을 입금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④ 당초 고객과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가 저축할 수 있습니다. 단, 당초 계약기간 내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예금 최고 예치금액으로 제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- 이 부금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정합니다. 다만, 정액적립식 부금은 3년제 이하로합니다.
- ① 계약기간 종료시 당초 고객과 약정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매년 자동연장 하여 관리합니다. 단, 정액적립식부금 중 만기일 이후 월저축금 수입으로 당초 약정한 만기일이 이연된 경우에는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합니다.

제5조 이자

- ①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율이 바뀐때마다 그 바꾼 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하며, 정액적립식부금 만기 지급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식예금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합니다.
- ② 이 부금을 만기일 후 지급청구 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, 만기일 이후 이율을 바꾼 때는 바꾼날부터 바꾼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셈합니다.
 - 단, 이 부금 가입자의 이자 선지급 요청에 따라 원금에 부리된 이자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이자계산시 이를 제하고 셈합니다.
- ③ 은행은 이 부금을 가입한 거래자에게 아래의 각 우대이율 항목에 해당하는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

대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로 셈한 이자를 기존이율로 계산된 이자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 최초 계약기간까지만 적용되며, 제5조③항3호의 자동이체 우대이율을 제외한모든 우대이율은 항목별로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.

- 1.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보유고객 우대이율(주택청약부금 가입시점에 보유)
 - 영업점 창구에서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하는 경우 : 연0.2%p
 - 인터넷뱅킹으로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하는 경우 : 연0.3%p
- 2. 명품여성종합통장 보유고객 우대이율(주택청약부금 가입시점에 보유)
 - 인터넷뱅킹으로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하는 경우 : 연0.3%p
- 3. 자동이체 우대이율
 -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차이상을 납입한 계좌중 납입회차가 2/3이상을 창구 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입금할 경우 : 연0.1%p
- ④ 자동연장된 기간의 이율적용은 중도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후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6조 특별중도해지

- 이 부금 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약정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① 당첨등록되어 해지하는 경우
- ② 주택면적을 늘리고자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

제7조 기타

- ① 이 부금은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부금은 계약금액 변경, 만기앞당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주택자금대출 등

이 부금의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 칙(1)

구 국민은행의 주택청약부금 및 구 주택은행의 주택청약부금은 2002.9.23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

부 칙(2)

이 약관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